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3집 (2010. 6) 405~430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33 (June. 2010) pp. 405~430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

이 창 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국문초록 >

국제사법재판소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사건에서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단일 해양경계선을 만장일치의 판결에 의해 획정했다. 판결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략 세 단계에 의한 해양경계선의 획정절차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평가된다. 즉, 첫째, 양측 해안의 적절한 기점 사이의 잠정적 중간선을 긋고, 둘째 형평한 결과의 달성을 위해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며, 셋째, 비례성을 적용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없는지확인하여 이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고 했다. 이 판결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 특히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제74조와 제83조에 대한 중요한 해석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관련국 사이의 해양관할권이 충돌하거나 중복될 경우, 그러한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관할권 행사는 원활하게 행사되지 못한다. 따라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해양경계 문제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역할이 주목받는 것이다. 흑해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이번 사건은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양경계획정 절차에 대한 일반적 경향의 확인,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 관련 해역의 설정 및 다양한 관련 사정의 취급은 현실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세르팡 섬에 대한 기점 효과의 부인은 독도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회피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물론, 세르팡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섬 주변 해역에 대한 처리 및 기점 효과만을 다룬 점이 독도와 다르지만, 어쨌든 폐쇄해 내지 반폐쇄해로서 동북아지역의 해역을 주목하면 이 사건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주제어: 해양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세르팡 섬

투고일: 2010.4.27 심사일: 2010.6.10 게재확정일: 2010.6.21

Ⅰ. 서론

1. 판결의 의미

국제법적으로 볼 때,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관계 당사국 사이의 경계획정에 대한 원칙과 관련 사정 및 대상 수역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라고할 수 있다. 각국은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하여 당연히 자국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상대국에게 주장한다.1) 따라서 해양경계에 대한 많은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은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제3의 기관을 이용하여 그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문제나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재판소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많은 판례를 통하여 경계획정 관련 원칙이나 경계획정의 경향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각 해양의 지리적, 지형적, 지질적 기타 특성과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사정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판례를 통하여 일반적인 원칙이나 경향을 추론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2)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하고 각국의 실행이 집적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및 판례를 통해 해양경계획정의 교섭 단계와 적용 가능한 관련 사정에 대한 일반화 내지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중간선원칙에 대신하여 육지의 자연연장을 중

¹⁾ 물론, 그러한 법적 측면 외에 정치적, 전략적 내지 역사적 시각에서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넓게 봤을 때, 해양경계획정의 교섭에 임하는 국가의 정책적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분석에 있어서 중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다만, 국제법의 정치적 성격 내지 외교적 성격을 중시하여 해양경계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 경계획정의 완성을 위한 국가의 협상태도에 대한 분석은 그러한 접근을 도외시하고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Bernard H. Oxman, Political, Strategic and Historical Considerations, Int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 (Jonathan I. Charney & Lewis M. Alexander ed.), 1993, pp.39-40).

²⁾ 우선, 대륙붕, 어업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등 확대된 해양관할수역의 성격이 다르고, 적용해야 할 원칙과 관련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또는 상대국과의 구체적인 교섭을 통해 경계획정의 원칙 내지 자국의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양한 각국의 입장으로부터 경계획정의 원칙 및 관련 사정에 대한 개략적인 분류 내지 도식화는 가능하다(Nuno Marques Antunes, Towards the Conceptualisation of Maritime Delimitation-Legal and Technical Aspects of a Political Process, 2003, pp.559-580).

시하는 형평의 원칙의 적용을 강조한 후, 이른바 형평을 지지하는 국가와 중간선을 지지하는 국가가 치열하게 대립해왔지만,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의 정착으로 적어도 400해리의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해양경계획정의 완성을 위한 절차적 예측가능성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국제사법 재판소의 최근의 판례는 매우 중요한데, 특히 2009년의 흑해 해양경계 사건에 대한 판결은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 및 중재재판소에 의해 확인되어온 판례의 경향을 확인하고, 또한 도서의 지위를 비롯한 관련 사정 내지 적용 문제를 정리한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경계를 완성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상대국과의 해양경계 교섭에 참고로 해야 할 내용이 적지않다.

2. 세르팡 섬의 처리

흑해의 연안국인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이차대전이 종결된 후 오랫동안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특히 양국 사이에 위치한 세르팡섬(Serpents' Island)의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3) 다뉴브강 하구 동쪽으로 약 20해리의 거리에 위치한 세르팡 섬은 약 0.17km의 면적과 2,000m 길이의해안선으로 구성된 작은 섬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연구원 100명 정도가 연구를위해 상주하고 있다. 4) 이 섬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방대한 해역의 귀속이 달려 있어서 양국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흑해는 석유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세르팡 섬의 처리에 따른 해역의 귀속은 양국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³⁾ 흑해는 다다넬스해협, 마르마라해와 보스포러스해에 의해 지중해와 연결된 폐쇄해로서, 북위 40도56분과 북위 46도33 사이 및 동경 27도27분과 동경 41도42분 사이에 위치해 있 다. 흑해는 약 432,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연안국들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 로 이루어져 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남쪽으로 흑해까지 뻗어 있다(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Judgement of 3 February 2009(이하 "The Black Sea Delimitation Case"라 함), para. 15).

⁴⁾ The Black Sea Delimitation Case, para. 16

3. 분쟁의 경위

세르팡 섬은 이차대전 후 1947년 연합국과 루마니아 간의 파리평화조약과 1948년 소련과 루마니아 사이의 국경의정서에 의해 소련에 귀속되었다. 파리평화조약이 직접 세르팡 섬의 귀속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경선을 명시한 의정서의 부속서에 그 내용이 규정된 것이다.5)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와 우크라이나의 독립에 따라 섬의 영유권은 우크라이나로 이전됐으며, 그러한 사정은 2003년 국경체제조약에서 확인됐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1997년에 체결한 선린 및 협력조약의 부속협정에서 흑해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해 교섭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부속협정 제4항). 그와 같은 교섭은 선린 및 협력조약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그에 의해 양국은 1998년 1월부터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 차원의 10여 차례 협상을 포함하여 24차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에 열린마지막 협상에서도 경계획정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⁶⁾. 결국 이러한 상황 하에 루마니아가 2004년 9월 16일 소장을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됐다.

Ⅱ. 양국의 주장

1. 세르팡 섬의 법적 지위

양국은 1997년에 체결한 선린 및 협력조약의 부속협정 제4항에 의해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도서의 법적 지위를 명시한 동 규정의 해석을 통해 양국 간 해양경계에 있어서 세르팡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 효과를 다루기로 한 것이다.

⁵⁾ ibid., para. 56

⁶⁾ ibid., para. 18

루마니아는 제121조 3항 및 관련 사례에 의해 세르팡 섬은 암석으로서 12해리 영해 이외의 수역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세르팡 섬은 무인 암석이 아니므로 완전한 섬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루마니아는 섬의 지질 구조, 담수의 부존재,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의 불가능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섬의 면적, 빗물의 이용, 경작이 가능한 토양의 존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2. 세르팡 섬의 효과와 경계획정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고, 12해리의 영해만 갖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르팡 섬을 우크라이나의 기점에서 제외하고 양국의 중간선을 해양경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루마니아는 섬 주변의원호 형태인 12해리 영해선은 2003년 국경체제조약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르팡 섬은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향하는 해안 쪽 해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요컨대,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이 비록 "특별한 사정"을 구성할 수 있지만 12해리를 넘는 어떤 효과도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8)

반면, 우크라이나는 세르팡 섬에 대한 완전한 효과를 인정하여, 양국의 해양경계는 동 섬을 우크라이나의 기점으로 한 중간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섬의 해안은 경계획정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 부분을 구성하므로, 잠 정적 등거리선이 설정된 후 두 번째 경계획정 단계에서 고려되는 하나의 관련 사정으로 격하될 수 없다고 했다. 9)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긴 해안선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해역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호는 극히 일부만 합의된 것으로 해양경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0)

⁷⁾ ibid., para. 180

⁸⁾ ibid., para. 182

⁹⁾ ibid., para. 183

¹⁰⁾ ibid., paras. 50-52

Ⅲ. 판결의 주요 내용

1. 판결 요약

국제사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다음의 5개 지점을 연결하는 해양경계선을 확정했다. 즉, 양국의 해양경계선은, 2003 국경체제조약 제1조에서 당사국들이 동의한바에 따라 제1지점에서 시작하여, 양국의 12해리 호가 인접 해안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선과 교차하는 제2지점(북위 45도03분18.5초와 동경 30도09분24.6초의 좌표)을 지나고, 제3지점(북위 44도46분38.7초와 동경 30도58분37.3초의 좌표)과 제4지점(북위 44도44분13.4초와 동경 31도10분27.7초의 좌표)을 통과하는 등거리선을 따라 제5지점(북위 44도02분53.0초와 동경 31도24분35.0초의좌표)에 이르고, 제5지점으로부터 해양경계선은 대략 남쪽 방향으로 등거리에 있는 선을 따라 계속 진행하여, 그 해양경계선이 제3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역에 이른다고 결정했다.11) 이에 의해 계쟁구역의 70% 이상이 루마니아의해역으로 배분됐다.

2. 경계획정 절차 및 관련 사정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의 일반적인 절차가 다음과 같이 확립됐다고 판시했다. 즉, 중복청구구역이나 대상수역이 정해지면, 우선, 잠정적 중간선 내지 등거리선을 긋고, 다음, 형평한 결과의 달성을 위해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며, 최종적으로, 비례성을 적용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 간 해양경계획정의 출발점으로서 중간선을 채택하고, 그러한 중간선이 여러 관련 사정(relevant circumstance)에 비추어 형평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인 해양경계선을 획정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세르팡 섬과 루마니아의 수리나 제방은 기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특히 세르팡 섬과 같은 작은 섬이 갖는 해역은 배후의 육지 영역이 발원하는 배타적 경

¹¹⁾ ibid., para. 219

제수역이나 대륙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무시한다고 한 점이 주목된 다.12)

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 해안의 결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형태 내지 모양을 주목하여, 각 해안의 바다로의 투영 내지 돌출(projection)이 상대국 해역 쪽으로 미치지 않으면 이를 관련 해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일부 해안이해안선 길이의 비교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관련 해안을 결정하고 해안선의 길이를비교를 한 결과,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해안선의 비율은 대략 1:2.8이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얀마이엔 사건(1:9) 및 리비아·몰타 사건(1:8)에서와 같은현저한 길이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다.13)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잠정적인 중간선의 설정에 의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에 배분되는 해역의 면적은 대략 1:2.15가 되며, 이는 형평한 배분으로 간주되어이를 조정할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4) 얀마이엔 사건에서는 약 1:3의 해역 면적이 배분됐다.15) 다만, 해안선 길이의 비교와 배분되는 해역 면적의 비교 사이의 균형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리적인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16)

그 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타 잠정적인 중간선을 조정할 만한 사정으로 안보적 요소나 단절 효과 등을 검토하였으나, 잠정적인 중간선을 조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어로 활동이나 석유·가스 채굴에 대한 국가 활동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몇 몇 사항은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3. 해안 길이의 불균형

우크라이나는. 경계선을 루마니아의 해안 가까이로 이동시킴으로써 잠정적 등거

¹²⁾ ibid., para. 187

¹³⁾ ibid., para. 215

¹⁴⁾ ibid., paras. 215-216

¹⁵⁾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d hoc Fischer, I.C.J. Reports 1993, p. 309, para. 14

¹⁶⁾ 田中嘉文, "海洋境界劃定における比例性概念-その機能と問題點-", (村瀨信也・江藤淳一, 『海洋境界劃定の國際法』), 2008, pp.42-43

리선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계해역에 접한 당사국들 해 안의 길이 사이의 불균형을 관련 사정으로 원용했다.17)

구체적으로, 해안의 형상이 주도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관련 사정으로서의 범위에 대해 광범위한 이해의 여지가 있다고 진술하고, 해안의 형상이, 해안의 길이라는 표현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해역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우세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즉,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은 루마니아의 해안 보다 네 배 이상이 길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정에서 다루어진 거의 모든 해양경계 사건들에서 "관련 해안의 길이에 대한 비교는 지금까지 내려진 수많은 판결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심지어 결정적인 역할도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당사국들의 해안길이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경계선의 설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관련 사정으로서,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잠정적 등거리선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18)

한편, 루마니아는 해안의 일반적 형상이 특별한 지리적 상황에서 등거리선의 조정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관련 사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특히 당사국들의 해안 길이 사이의 특정 불균형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해양 경계획정에서 당사국들의 해안 사이의 불균형이 특징적으로 관련 사정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현재의 사건에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각각의 해안의 길이에 명백한 불균형은 없다고 했다. 19)

루마니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균형은 "형평의 원칙/특별 사정 접근의 적용에 의해 도출되는 선을 확인한 후에만" 다루어져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했다. 20) 결론적으로 루마니아는 의심스러운 "그 해역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우세"와 당사국들의 "해안 길이 사이의 불균형"은 이 사건에서 관련 사정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21)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안의 각각의 길이는 잠정적으로 설정된 등거

¹⁷⁾ ibid., para. 158

¹⁸⁾ ibid., para. 162

¹⁹⁾ ibid., para. 159

²⁰⁾ ibid., para. 160

²¹⁾ ibid., para. 161

리선을 확인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경계획정은 자원이나 해역의 배분과는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22), 잠정적 등거리선의 초기 설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의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23) 다만, 해안 길이에 있어서불균형이 특별히 현저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지리적 사실을, 어느 정도조정이 필요한, 설정될 잠정적 등거리선에 대한 관련 사정으로 다루도록 선택할수 있다고 했다.24)

국제사법재판소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육지·해양경계사건에서 "당사국들 각각의 해안선 길이의 실질적 차이가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²⁵⁾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동 사건에서 등거리선을 변경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린란드와 얀마이엔(덴마크 대 노르웨이) 사이의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사건에서, 얀마이엔과 그린란드의 해안의 길이 사이의불균형(대략 1:9)은 잠정적 중간선의 수정이 필요한 "특별 사정"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륙붕과 어업수역에 있어서 불형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그 선을 얀마이엔의 해안에 더 가까이 하는 것이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해안 길이의 불균형에 대한 고려가 동부그린란드 해안 앞부분의 길이와 얀마이엔의 그것 사이의 관계의 직접적이고 수학적인 적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²⁶).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1985년 리비아·몰타대륙봉사건의 판결 내용을 상기했다. 이 사건은 대향국 간의 대륙봉의 경계획정에 대한 사건인데, 이탈리아의 소송 참가가 거부되어 이탈리아의 대륙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획정이 이루어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제도에 한정된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의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실리가 고려되어 몰타 쪽으로 이동된 경계선을 결정했다. 27)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여, 특히 비례성을 적용할

²²⁾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1969, p. 22, para. 18

²³⁾ The Black Sea Delimitation Case, para.163

²⁴⁾ ibid., para.164

²⁵⁾ Judgment, I.C.J. Report 2002, p. 446, para. 301

²⁶⁾ Judgment, I.C.J. Reports 1993, p. 69, para. 69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만약 비례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면, 다른 고려를 위한 어떤 여지가 남아 있는지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륙붕 관련 권리들에 대한 권원의 원칙이 되는 동시에 또한 그 원칙을 실행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장의 기초로서 비례를 사용한다는 것의 약점은, 자신의 권리 내의 수단으로서 비례의 사용이 국가실행, 특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국가 견해의 공식적 표명에 있어서, 또는 판결에 있어서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28)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몰타와 리비아의 관련 해안 길이에 있어서 차이(1:8의 비율)가 "중간선의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조정의 정도는 엄밀한 수학적 운용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다.²⁹⁾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1984년 메인만 해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사건(캐나다 대 미국)에서 소재판부가 "경우에 따라서 양국 해안 범위의 어떠한 불균형도 동일한 경계획정 구역이 되는 적절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주목했다.30) 그러나 소재판부는, 무엇이 "국제적 해양경계에서 고려될 적절한 기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문맥에서, 그렇게 고려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31)

이와 관련하여,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관련 당사국 각각의 해안의 범위를 고려한다는 자체가 경계획정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준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경계획정의 실행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소재판부는, 이러한 개념은,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개념과 무관한 방법으로 처음에 설정된 잠정적 경계선이 특정 사건에서 어떤 지리적 특징과 관련하여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주로 제시됐다고 인식한다. 이 문제에 대한 소재판부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²⁷⁾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Libyan Arab Jamahiriya/Malta)(Judgment of 3 June 1985), paras.45-54

²⁸⁾ ibid, p. 45, para. 58

²⁹⁾ ibid., p. 50, para. 68

³⁰⁾ Judgment, I.C.J. Reports 1984, p. 313, para. 157

³¹⁾ ibid., p. 312, para. 157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양경계획정은 분명히 관련 해역에서 당사국에 속하는 해안의 길이 각각에 비례하여 계쟁수역을 직접 구분하여 설정될 수는 없지만, 다른 근거로 설정된 경계선으로부터 도출된 그러한 해안의 길이에 대한 상당한 불균형은 적절한 수정이 필요한 사정을 분명히 구성한다".32)

이러한 미국과 캐나다 간의 메인만 경계획정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재판부, 즉 특별재판부가 어업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단일 경계획정을 다룬 사건이다. 미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원칙(the land dominates the sea), 지리적 여건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을 주장했고, 캐나다는 등거리선 원칙, 역사적, 인적 요인 등을 주장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한 기준의 적용 및 그 지역의 관련사정을 고려한 형평한 결과의 확보가 경계획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결국 분쟁해역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경계선이 획정됐는데, 캐나다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형평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형평한 결과를 위한 조정과 화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법의 해석과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33)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관련 해안 사이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 필요한 특별히 현저한 불균형을 이 시점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즉, 비록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의 길이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는 앞에서 카르키니츠카만의 해안(대략 278km)을 추가적인 고려로부터 제외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34)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해안의 상당한 부분이 우크라이나 해안의 다른 구역과 마찬가지로 동일 해역을 향하는 관련 돌출로 간주되고, 따라서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권원을 강화하지만, 우크라이나 해역을 확장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5)

³²⁾ ibid., p. 323, para. 185

³³⁾ 奥脇直也,「排他的經濟水域の境界劃定」,『海洋法條約體制の進展と國內措置』第1號, 1997, pp.62-66

³⁴⁾ The Black Sea Delimitation Case, para. 100

³⁵⁾ ibid., para. 168

4. 흑해의 폐쇄적 성격과 기존 경계선

루마니아는 흑해의 폐쇄적 성격도 역시 경계획정될 구역의 지리적 문맥을 고려해야 할 광범위한 필요성의 일부로서 관련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루마니아에 의하면, 등거리선의 형평한 성격을 고려할 때, 흑해의 "일반적인 해양 지리"는 반드시평가되어야 하며, 또한, 불형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경계획정도 같은 해역에서 이전에 다른 연안국들 사이에 사용됐던 방법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러한 지리적 요소는 이전에 존재하던 경계협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다는 것이다.36)

루마니아는 흑해 내의 모든 경계협정들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등거리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루마니아는 이러한 협정들 중 두 협정에 의해 설정된 경계획정선들은 임시로 정해진 구역들과 함께 마무리되었는데, 그 최종적인 방향은 추후 논의에 따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당사국들이 제3국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대상으로 루마니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37)

따라서 루마니아는 흑해의 폐쇄해적 성격과 다소 좁은 흑해의 규모는, 유효한 경계협정들에 의해 정해진 해결책들과 함께,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역에 있 어서 경계획정 과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관련 사정을 구성한다고 했다.38)

반면, 우크라이나의 견해에 의하면, 폐쇄해로서 흑해의 특징과, 흑해에 인접한다른 국가들 사이에 과거에 체결된 해양경계협정들의 중요성에 대한 루마니아의주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나 또는 사실적 문맥에 있어서 어떠한 지지도 존재하지않는다고 했다. 단순히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폐쇄해에서 이루어지는 경계획정들에대한 어떤 특별한 체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흑해의폐쇄해적 성격이 "그 자체로서 경계획정 목적에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사정은 아니며", 현재의 소송절차에 적용될 경계획정 방법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주장했다.39)

³⁶⁾ ibid., para. 169

³⁷⁾ ibid., para. 170

³⁸⁾ ibid., para. 171

³⁹⁾ ibid., para. 172

또한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으로 양자간 협정은 제3국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흑해에 현존하는 해양경계협정들은 현재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0)

우크라이나는 오직 제한된 의미 내에서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해역 근처의 제3국의 존재가 관련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경계획정 방법의 선택이나 해양의 특성(폐쇄해인지의 여부)과는 무관하다.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제3국의 존재는 단지 국제사법재판소가 경계획정 구역의 주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침해를 피하기 위해 경계획정선의 정확한 종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정도로만 관련될 수 있다.41)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획정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했을 때, 잠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할 것이라고 앞서 암시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42) 흑해와 관련된 모든 경계협 정들에서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흑해와 관련된 두 경계협정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첫 번째, 흑해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은 1978년 6월 23일 터키와 소련 사이에 체결됐다. 대략 8년 후, 그들은 1986년 12월 23일과 1987년 2월 6일자 각서교환에 의해, 그들의 1978년 협정에서 합의한 대륙붕 경계가 역시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사이의 경계가 된다고 합의했다. 이 선의 서쪽 끝 부분은 북위 43도 23분43초와 동경 32도00분00초의 좌표 및 북위 43도26분59초와 동경 31도20분48초의 좌표를 갖는 두 지점 사이에서 각각 획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데, 추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1978년 협정과 각서교환에 의해 이루어진 협정은, 1991년 말 소련의 해체 후, 소련의 국제적 법인격을 승계한 국가로서 러시아연방에게 뿐만 아니라 흑해에 인접한 소련의 승계국들에게도 효력이유지되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국가 중 하나였다.43)

두 번째 협정은 레조프스카/무트루데(Rezovska/Mutludere)강 하구에서의 경계획정과 흑해 내 양국 사이 해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1997년 12월 4일 터키와

⁴⁰⁾ ibid., para. 173

⁴¹⁾ ibid., para. 173

⁴²⁾ ibid., para. 116

⁴³⁾ ibid., para. 175

불가리아 사이의 협정이다. 북위 43도19분54초와 동경 31도06분33초의 지리적 지점 및 북위 43도26분49초와 동경 31도20분43초의 지리적 지점 사이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추가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교섭할 수 있도록 남겨 두었다.⁴⁴⁾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의 사건에서 획정하도록 요청받은 단일 해양경계선의 종점을 고려할 때, 터키와 우크라이나 사이뿐 아니라 터키와 불가리아 사이의 합의된 해양경계획정도 유념할 것이라고 했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전술한 경계협정들과 흑해의 폐쇄해적 성격에 비추어, 임시로 그어진 등거리선에 대한 어떠한 조정도 요청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46)

5. 당사국들의 행위

우크라이나는 관련 해역 내의 국가 활동이 "우크라이나가 제안하는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 주장선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관련 사정을 구성한다"고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묵시적 합의나 잠정협정으로 인한 어떠한 선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 당사국들의 이러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는 당사국들의 실질적 행위와 관련된 주장들을 평가하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루마니아의 활동이나 또는 활동의 결여가, 계쟁구역 내에서 "X지점"에 이르기까지 기존 해양경계획정이 있었다는 루마니아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계쟁구역 내에서 루마니아에 의한 유사한 활동의 결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루마니아가 취한 입장과양립하지 않는다고 했다.47)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건에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고 있는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석유와 가스 광상에 대한 탐사와 관련된 활동을 1993년, 2001년 그리고 2003년에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허가들의 존재가, 이소송절차에서 루마니아가 주장하는 대륙붕 구역 내의 석유 및 가스 광상에 대한

⁴⁴⁾ ibid., para. 176

⁴⁵⁾ ibid., para. 177

⁴⁶⁾ ibid., para. 178

⁴⁷⁾ ibid., para. 189

탐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1997년 부속협정을 전후하여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2001년 이전에 루마니아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구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석유 및 가스 채취활동에 대해 전혀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했다. 48)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석유 관련 활동은 자국의 경계획정선과 양립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다른 관련 사정들, 특히 자연 지리와 함께,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흑해의 북서쪽 구역에서 그들의 어획관리에 있어서 존중한 것처럼", 당사국들의 배타적 어업수역의 한계와 더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그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한 것은 루마니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가 그 해역의 순찰에대해 어떠한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연안경비대가 독자적인 책임 하에 불법 조업선박들을 나포하고, 가능한 경우, 그들을 우크라이나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호송했으며 그리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에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49)

루마니아가 제출한 결정적 기일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설사 결정적 기일이 있었고, 그 결정적 기일이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루마니아의 신청 날짜, 즉 2004년 9월 16일이 된다"고 주장했다.50)

한편, 루마니아는, 관련 해역에서의 국가 활동, 즉 석유와 가스의 탐사 및 개발과 어업 실행에 대한 허가들은 관련 사정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법적 원칙의 문제로서, "권한의 행사" 또는 "국가 활동"은 해양경계획정에 고려되는 요소를 구성할 수 없다. 해양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그들이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사정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어떤 묵시적 합의를 반영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고 루마니아는 주장했다. 루마니아는 결정적 기일 이전의 국가 활동만이 이러한 일반적 규칙에 대한 예외로서 관련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어떤 묵시적 합의나 잠정협

⁴⁸⁾ ibid., para. 190

⁴⁹⁾ ibid., para. 191

⁵⁰⁾ ibid., para. 192

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마니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권한의 행사"는 어떤 "사실상의 선"이나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를 그럭저럭 증명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해양경계획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된 루마니아의 묵인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1949년 합의의사록과 관련된 루마니아의 주장을 반박하는" 요소를 구성할 수 없다. 루마니아는, 계쟁구역에서의 국가 활동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로 미루어볼 때,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국가 활동들이, 사실적 또는 법적으로, 그것들을 경계획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사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따랐다고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51)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1982년의 튀니지와 리비아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계선을 획정했는데, 지리적 조건, 해안선의 형상, 섬의 존재와 함께 석유 양허의 부여를 관련 사정의 일부로 고려했다.52)

또한 루마니아는 1997년 부속협정에 의해 양 당사국이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의 존재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인식했고, 경계획정협정의 체결을 위한 추후 협상의 틀을 세웠다는 점을 상기했다. 루마니아는 분쟁의 존재에 대한 협정 규정들은 이미 오랫동안 존재했던 사실적 상황의 단순한 확인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따라서,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1997년 부속협정의 체결 이후 발생한 어떠한석유 관련 실행도 분쟁이 그 날짜까지 이미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소송절차와는 무관하다.53)

루마니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석유 양허 실행이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경계획정에 아무런 근거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양허에 포함되는 해역은 "현재의 소송절차상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대략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세 개의 허가 중 두 개는 2001년과 2003년, 즉 1997년의 결정적 기일 이후에 발급됐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일관되게 우크라이나의 탄화수소 활동에 대하여 반대했다.54)

⁵¹⁾ ibid., para. 193

⁵²⁾ Louis B. Sohn and John E. Noyes, *Cases and the Materials on the Law of the Sea*, pp. 311-316; 山本草二, 『海洋法と國內法制』, 1988, pp.175-177; 『海洋法』, 1992, pp.208-209

⁵³⁾ ibid., para. 194

⁵⁴⁾ ibid., para. 195

어로 활동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당사국들의 실행이 현재 사건에 있어서 해양 경계획정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데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어느 당사국도 원양어종이 한정된 해역에서 어로 활동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원용하는 실행은 최근의 것으로 계쟁구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그에 대해 항상 이의를 제기했으며, 또한 제3국은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 해군 순찰과 관련하여, 비록 그것들이 관련 사정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라도,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모든 해군 관련 사건은 결정적 기일 이후의 일이며,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55)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당사국들 사이의 유효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전에 결론을 내렸던 것을 상기했다.56)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가 당사국들 사이의 각각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구분하는 선에 대한 묵시적 합의나 잠정협정을 증명하기 위해국가 활동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루마니아가주장하는 선을 반박하기 위해 국가 활동을 언급했다.57)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 사건의 경우, 이러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위에서 원용된 국가 활동에 어떤 특별한 역할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58) 바르바도스와 트리니다드토바고 간 사건에 있어서 중재재판소가 밝혔듯이, "국제재판소와 법원은 판결에서 자원과 관련된 기준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소를 관련 사정으로 적용하지 않았다."59) 국제사법재판소는 어업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주장했던 것 외의 다른 경계획정선이 "주민의 생활과 경제적 행복에 파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했다.60)

국제사법재판소는, 전술한 국가 활동들이 현재 사건에 있어서 관련 사정을 구성

⁵⁵⁾ ibid., para. 196

⁵⁶⁾ ibid., para. 76

⁵⁷⁾ ibid., para. 197

⁵⁸⁾ ibid., para. 198

⁵⁹⁾ Award of 11 April 2006, RIAA, Vol. XXVII, p. 214, para. 241

⁶⁰⁾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ada/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1984*, p. 342, para. 237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들에 의해 논의된 결정적 기일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6. 안보에 대한 고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안보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당사국 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 대립이 심한 국가들은 안보에 대한 측면을 소홀히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 해양선진국과 연안국이 이른바 착탄거리설(cannon shot rule)에 의해 영해의 범위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해양경계에 있어서 안보적 측면은 군사수역이나 안보수역과 같은 특별한 해역의 설정 문제에 관한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61)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안보 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루마니아는 자국에 의해 제시된 경계획정이 12해리의 해양공간대를 갖는 세르팡 섬을 포함하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이익에 적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경계획정선은 비합리적으로 루마니아의 해안 가까이에 있으며, 따라서 루마니아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62)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경계획정선은 루마니아의 해안선 앞바다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루마니아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어떠한 안보 이익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안보 및 기타문제들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갖는 지배적 이익을, 해안 삼면에서 흑해의 이러한부분을 따라가는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위치의 기능"이라 부르고, 우크라이나가 그해역을 순찰하고, 그 해역에서의 불법어로 및 기타 활동을 방지하는 유일한 당사국이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자국의 주장은 이러한 당사국들의 행위 양상과 부합되지만, 루마니아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63)

⁶¹⁾ Douglas M. Johnston, *The theory and history of ocean boundary-making*,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1988. pp. 12-14

⁶²⁾ The Black Sea Delimitation Case, para. 202

⁶³⁾ ibid., para. 203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논점을 두 가지로 제한했다. 첫째, 당사국들의 적법한 안보에 대한 고려는 최종 경계획정선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64) 둘째, 그러나 현재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그은 잠정적 등거리선은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에 의해 그어진 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제사법재판소 에 의해 결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은 각 당사국의 적법한 안보 이익을 충분히 반영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에 근거하여 그 선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65)

Ⅳ. 시사점

이 사건은 흑해라는 폐쇄해에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결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좁은 해역에서 도서의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한중일 삼국은 도서의 영유권 문제를 차치하면 어떤 형태로든이를 참고로 하여 해양경계를 완성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66)

예컨대, 해양경계획정 절차에 대한 일반적 경향의 확인,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 관련 해역의 설정 및 다양한 관련 사정의 취급은 현실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세르팡 섬에 대한 기점 효과의 부인은 독도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과 관련하여, 양국이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세르팡섬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명시적인 언급을 회피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67) 물론, 세르팡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제기

⁶⁴⁾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Judgment, I.C.J. Reports 1985, p. 42, para.
51

⁶⁵⁾ The Black Sea Delimitation Case, para. 204

⁶⁶⁾ 한중일 삼국의 해양경계에 대한 입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가능한 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원칙과 관련 사정을 주장하여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실현하려고 한다. 예컨대, 일본이 중간선원칙을 주장하고 중국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국의 해저지형을 고려한 국제법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창위, "새로운 어업질서와 동북아지역의 해양경계", 『해사법연구』 14권 1호, 2002, pp.28-30).

⁶⁷⁾ 이 사건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시사점 중 독도의 처리나 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되지 않고, 섬 주변 해역에 대한 처리 및 기점 효과만을 다룬 점이 독도와 다르지만, 어쨌든 폐쇄해 내지 반폐쇄해로서 동북아지역의 해역을 주목하면 이 사건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해안 길이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서해에 있어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한반도의 서해 안은 비교적 굴곡이 심하고 도서가 산재해 있어서 중국의 동중국해 쪽 해안과 여러 가지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국의 복잡한 해안이 상대국의 단순한 해안보다 길이나 범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경계획정의 대상구역, 즉, 관련 해안과 해역의 설정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된다. 우리나라는 본 사건에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고려하여 관련 해안과해역의 결정에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중간선의 조정을 위한 고려 요소는 없다고 한 판결 내용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부분이다.

다만, 비례성을 고려하여 불균형을 수정하더라도, 실제로는 잠정적인 중간선 내지 등거리선을 조정할 때 이미 관련 사정의 적용에 의해 비례성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⁶⁸⁾, 그러한 경계선의 형평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비례성은 형식적인 것이 되기 쉽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간선을 조정할 때관련 사정의 적용에 의한 비례성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경계획정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흑해의 폐쇄적 성격 및 기존의 경계선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한반도 주변 해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직접 참고가 될 수 있는 점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일간의 해양경계와 관련하여, 기존 대륙붕경계협정 및 공동개발협정은 어떤형태로든 한일양국이 처리해야할 문제가 된다. 따라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관계 내지 양자간 경계획정의 관계를 정립하여 경계획정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타, 본고에서 상술한 당사국들의 관련 행위 및 안보적 요소, 그리고 유효한

비판적 고찰은, 김용환, "ICJ 흑해 해양경계획정 판결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54권2호, 2009, pp.245-247에도 언급되어 있음.

⁶⁸⁾ 田中嘉文 supra note 16, pp.42-43

기점이나 폐쇄효과 등도 주의 깊게 분석하여 중국이나 일본과의 경계획정 교섭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보적 요소는 중국과의 해양경계에 있어서 이어도나 가거초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의 성격에 대한 중국 측의 의문을 해소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어쨌든, 이어도는 영유권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중 암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이창위, "새로운 어업질서와 동북아지역의 해양경계", 『해사법연구』14권 1호, 2002. 村瀬信也・江藤淳一. 『海洋境界劃定の國際法』, 2008

奥脇直也,「排他的經濟水域の境界劃定」,『海洋法條約體制の進展と國內措置』第1號, 1997

山本草二、『海洋法と國內法制』、1988

山本草二,『海洋法』, 1992

Award of 11 April 2006, RIAA, Vol. XXVII

- Bernard H. Oxman, Political, Strategic and Historical Considerations, Int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 (Jonathan I. Charney & Lewis M. Alexander ed.), 1993
- 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Romania v. Ukraine), Judgement of 3 February 2009
- Continental Shelf Case(Libyan Arab Jamahiriya/Malta), Judgment, I.C.J. Reports 1985
- Cas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Canada/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1984
- Douglas M. Johnston, The theory and history of ocean boundary-making,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1988
- Louis B. Sohn and John E. Noyes, Cases and the Materials on the

Law of the Sea, 2003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1969
- Nuno Marques Antunes, Towards the Conceptualisation of Maritime Delimitation-Legal and Technical Aspects of a Politcal Process, 2003

(Abstract)

Case concern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between Romania and Ukraine

Lee, Chang Wee (Professor, School of Law University of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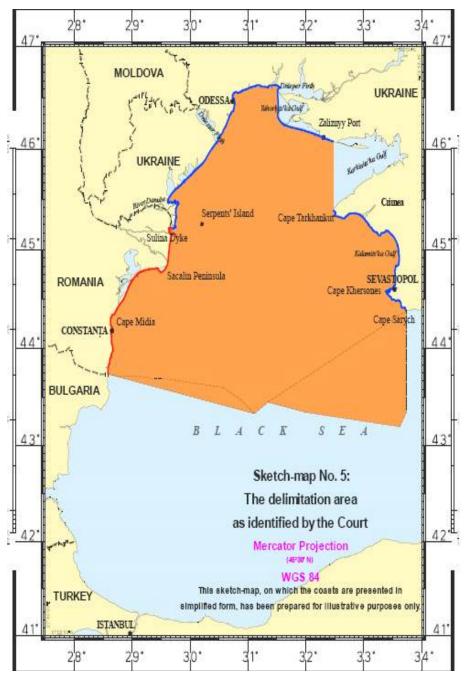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etermined the single maritime boundary between the respective EEZs and continental shelves of Romania and Ukraine in a unanimous decision. The Court clarified its methodology for delimiting the EEZ/continental shelf, following a three-stage process. First, it drew a provisional equidistance line between appropriate basepoints on the two coasts; secondly, it confirmed whether this line required adjustment considering relevant circumstances; and finally, it verified that the line did not lead to an inequitable result in accordance with proportionality. The Judgment contains important interpretations of several articles in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otably Articles 74 and 83.

Without rul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marine areas where the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overlaps, the legal and legitimate uses of these areas cannot be enjoyed effectively. In this sense, the international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 of central importance. There is no doubt that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law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enc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case law in this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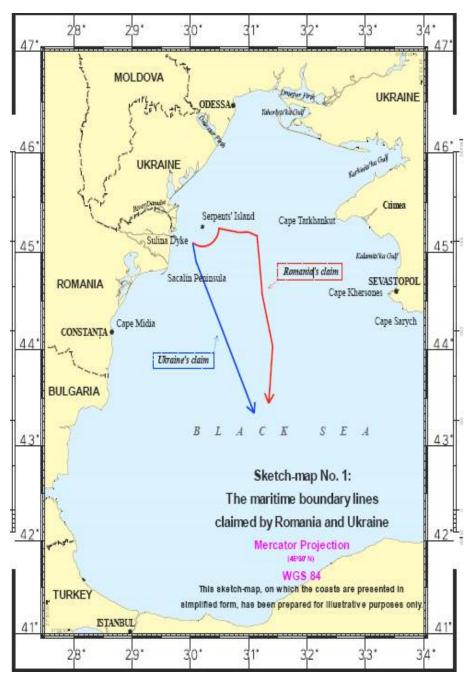
This commentary examines the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Romania and Ukraine in the Black Sea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fter reviewing summary of the decision and the claims of both parties in the Romania/Ukraine case, this commentary addresses several principal issues: methodology of maritime delimitations as well as relevant circumstances, disproportion between lengths of coasts, enclosed nature of the Black Sea and the delimitations already effected in the region, conduct of the parties, security considerations of the Parties, and concluding remarks.

As the significance of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enclosed or semi-enclosed seas ultimately lies in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maritime order through the efficient allocation of jurisdiction or maritime resources, close examination of this case is of great help in the proces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Northeast Asia. The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like the Black sea, come under the provision on the enclosed or semi-enclosed sea in article 122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y way, this case could be of great help for the preparation of maritime delimit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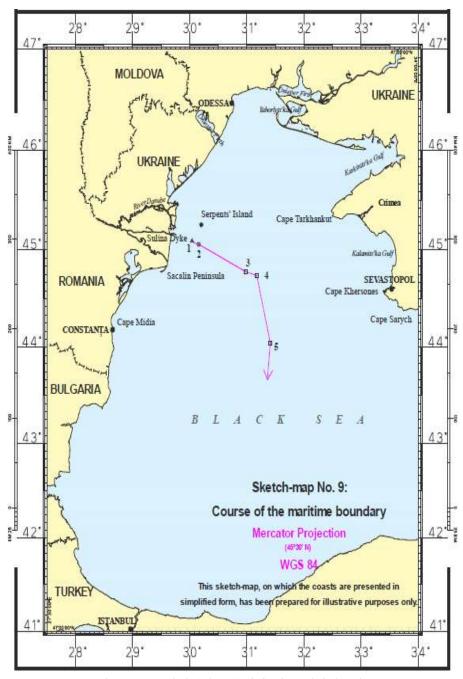
Key word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Serpents' Island



지도 1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경계획정해역



지도 2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해양경계선



지도 3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최종 해양경계선